제조물책임법(PL법)의 변화와 대처방안

Production Liability Law and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PL법

2.2 우리 나라 소비자 보호법

2.3 외국의 PL법

2.4 PL법에 관련된 기업의 대처방안

3. 결론

李 相 福*

Ree, Sang Bok

ABSTRACT

In this paper, we explain Production Liability(PL) law and research method of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 introduction, we give some examples of PL law. In main issue, we explain more detail PL law. We survey several country PL law, specially U.S.A., EU, Japan whose are deeply related with us as important export country. We discuss our country PL status, our country don't legislate PL law until now. We have consumer protection law(消費者保護法) which is weaker than PL law but stronger than civil law(民法). We believe that PL law will be legislated within not long time. At last we discuss protection and defence of PL law inside of company and outside of company as PL insurance.

*공장관리기술사,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 조교수. 한국표준협회 비상근 수석연구위원.

1. 서론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은 제조물(상업목적)의 제조자 등이 제조물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간단하게 PL법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다.

1988년 택사스주에서 하이네스(Hines)의 5세된 아들에게 앞뜰의 잔디를 깎으라고 하자 탑승용 잔디깎기를 운전하여 방향을 바꾸는 중에 기계가 멈추었다. 그 아이는 그 기계를 작동하기 위하여 미는 중에 넘어져 양팔이 잔디깎기의 칼날에 닿아 한쪽 손과 한쪽 팔뚝이 잘렸다. 이 사고로 아버지는 잔디깎기 기계회사(Ariens Co.)를 상대로 PL법 적용 소송을 내었다. 아버지는 잔디깎는 기계는 탑승자가 자리에서 내리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져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2천4백만 달러의 배상 금액을 지불토록 하였다. 1990년 미국에 수출한 한국 로우프철제품이 루이지아나 법원에서 철사줄의 결함으로 지지대가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손상된 사건에 PL법을 적용하여 한국기업에게 9백만 달러의 벌금과 26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2]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 각국에서 입법 실시되는 PL법은 제조물결합에 대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피해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만으로도 기업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PL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사 존립도 문제가 된다. 미국에선 많은 회사가 이미 PL법에 적용되어 과다한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도산하였다. PL법과 기존의 민법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민법에서도 제조물결함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민법(불법행위책임, 한국민법 750조)으로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피해자 자신이 면밀히 조사한 후 입증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조자의 과실입증이 어려워 사실상 소비자에게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PL법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사실만 입증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민법에서 제조과정의 실수를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 것이다. 우리가 PL법을 알아야할 큰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비자 보호이다. PL법은 소비자 보호에 핵심이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찾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도 곧 PL법이 입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선 이미 PL법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제품을 함부로 수출했다가 PL법으로 우리 기업이 곤경에 빠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하는데 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만 PL법이 문제가 되어 왔지만 1990년 중반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PL법이 확산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1995년을 기준으로 216개국에 7,723개 품목을 1,250억불 수출하고 있으며, 이중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 55%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책임부담기간은 10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수출품의 엄청난 량이 PL법 위험에 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PL법에 의한 특히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제조자에게도 편리한 점이 있다. PL법이 없는 상황에서, 악덕 소비자는 제조물결함을 언론에 이용하여 불매운동을 일으키거나, 언론 공개의 협박으로 부당이득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제조자 입장에서는 PL법이 제품의 책임한계를 정함으로서 제조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정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PL법이 입법되지 않고 소비자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PL법이 제정될 것이다.[1,3,4,6,7]

2. 본론

본론에서는 PL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선진제국의 PL법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살펴본다.

2.1 PL법

PL법 제정 목적은 첫째 소비자 보호이다.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인적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둘째 '결함 및 피해 방지'가 목적이다. 기존의 민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의 과실을 증명해야 했으나, PL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과실 증명은 제조물 제조중의 부주의 또는 실수를 증명하는 것이다. 결함 증명은 제조물 결과만 갖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PL법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적으로 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농림수산물 등 제1차 생산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PL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제조물은 가공되지 않은 농림수산물, 정보서비스, 건축물, 전기 등의 무체 에너지, 부동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PL법에서는 수입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제조물책임 보상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제조업자, 자기명의하의 판매상, 부품제조 공급업자, 조립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도·소매상인), 각종 건축업자, 시설물 설치수리업자 등이 해당된다. 결함의 의미는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결함의 형태는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 제조상의 결함(manufacturing defect), 지시 경고상의 결함(failure to warn or instruct), 개발도상의 위험(development risk) 또는 기술상의 결함(state of art)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1,4,6]

2.2 우리 나라 소비자보호법

우리 나라는 다음에 살펴보는 외국과 같은 수준의 PL법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1987년 소비지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경제법의 일부로서 선진국 수준의 PL법은 아니다. 1995년에 소비자보호원에선 제조물책임 법안을 마련하여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는 1996년엔 PL법 입법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소비자보호원에선 꾸준히 PL법에 관한 세미나나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PL법이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국(다음절 참조)뿐만 아니라 대만(1993년), 필리핀(1992)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소비자가 제조물결함으로 피해를 입으면 생산물 배상에 관한 민사책임법리의 과실책임주의를 따르게 되어있어 소비자보호의 입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소송에

〈표 1〉 결함의 구분

결함 종류	내 용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은 생산물의 외형적인 유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 및 구종에 관한 일절의 결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함은 보통 생산물의 일관작업계열에서 발생하게 되며 상품의 안전성, 효용성, 매력성 및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제조업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제품의 안전설계에 관한 사건은 위험이 숨겨진 사건, 불성실하게 안전장치를 한 사건, 부적당한 자료에 관한 사건 등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 있어서의 부주의로 제품의 제조업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설계상 결함과 차이점은 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품은 일련의 전 제품에 똑같은 형태의 결함이 발생하나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은 실수한 특정제품에만 결함이 발생하되 결함의 양태는 다양할 수 있다.
지시·경고상의 결함	위험에 대한 경고의무는 과실책임, 보증책임 및 엄격책임 모두에 적용되는 의무로서 제조업자는 제품의 사용에 관하여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부당한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이 경고는 합리적이고 강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위험성을 기술하고 또한 그 위험성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야 한다. 위험경고는 위험정도에 따라서 경고위험이 명백하고 쉽게 명시해야 한다. 단 제품이 시장화 되리 당시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 특히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위험에 대한 경고의무 위반은 부인되고 있다.
개발도상의 위험 또는 기술상의 결함	제품개발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서 볼 때 당해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판단되었으나 사고발생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하여 위험하다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되나 미국에서는 제조업자가 계속적으로 그 위험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 조사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위험을 방지하여야할 '여후적 주의의무(餘後的 注意義務)'를 인정하고 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적절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는 배상심의기구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985년 12월 31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공표되어 각종 품목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좀더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1986년 12월 31일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국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중 제조물책임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9]

그 외에 단체, 소비자보호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1996년 3월 30일로 발표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제조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손쉬운 방법으론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보호원은 1987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

<표 2> 소비자 보호법 중 PL관련 조항

조항	제목	내 용
제6조	위해의 방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다.
제7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8조	표시의 기준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선택이 잘못되는 일 없도록 표시기준을 정한다.
제9조	광고의 기준제정	국가는 물품 또는 용역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제10조	거래의 적정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각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가 자주권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소비자피해의 구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3조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3	수거 파기명령	폐기·수리(리콜)에 대한 규정

의해 같은 해 7월 1일에 설립된 재정경제원 산하 특수공익법인이다. 여기서는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상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조사,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시책 연구 및 건의, 소비 생활 합리화를 위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소비 생활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전화3460-3000).

폐기·수리 : (우리 나라에서는 리콜을 의미하는 용어로 폐기·수리 혹은 결함시정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선 리콜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 나라도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리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리콜제도는 결함상품에 대한 공개회수제도이다. 리콜에는 결함상품의 횟수뿐만 아니라 교환, 환불, 수리 등도 포함된다. 본래 리콜제도는 결함상품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앞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여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리콜과 사업자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수행한 리콜의 결과가 소비자의 안전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당해 영역의 공급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강제리콜제도가 있다.(강제리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콜제도는 PL법과 더불어 중요한 소비자안전정책의 하나이다. PL법이 소비자 피해를 손쉬운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제도인 반면, 리콜제도는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미국에선 이미 1960년, 프랑스 1983, 일본은 196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 강제리콜명령보다는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전체의 95% 이상이 된다.

우리 나라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제도는 ①리콜대상에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포함한 점, ②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모두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점, ③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순수 자발적 리콜이라기 보다는 행정감시를 받는 리콜제도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9]

우리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선진국에서 리콜을 당하면 리콜비용이 막대하여 그 동안 수출한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이점을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2.3 외국의 PL법

외국의 PL법으로는 우리 나라와 관련이 많은 미국, EU, 일본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이들 선진국들은 PL 소송과 리콜제도가 강력하다(특히 미국). 우리와 수출 관계가 많은 이들 나라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은 각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2.3.1 미국의 PL법

미국에는 PL법이 따로 성문화된 법률은 없고 판례법으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가장 엄격하게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과대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으로 도산이 속출하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중지하는 바람에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보고되고 있다. 제조자와 공급자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 보증책임)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엄격책임) 두 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가. 하자담보책임 : 책임의 종류 및 요건으로는 명시적인 하자담보책임과 묵시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명시적인 하자담보책임은 물품의 공급자가 일정한 품질을 명시적으로 약속, 표시, 확인하거나, 샘플 또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당해 거래의 조건으로 된 하자담보책임이다. 묵시적 하자담보책임은 물품 공급자가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이다. 이는 일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판매적격 보증과 특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으로 나눈다. 판매적격 보증은 당해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에게만 인정되는 책임이다. 특정목적 적합성 보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이 적합한 물건을 골라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고, 매도인이 그러한 목적과 신뢰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일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책임이 인정되면 직접적인 손해(제품 교체, 수리, 손실비용)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파생적인 손해까지 책임을 지게된다. 면책의 경우로는 명시적인 하자담보책임에선 불가능하고, 묵시적 하자담보책임 경우에는 책임부정이 가능하다. 미리 제품의 결함가능성을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나. 제조물책임 : 결함 있는 제품에 엄격하게

적용된다. 결함의 종류는 비합리적으로 위험한 제조물, 제조상의 결함(동일한 제조과정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다른 경우), 설계상의 결함, 경고상의 결함이 있다. 손해배상 대상자는 상업적으로 공급한 자들은 모두 적용된다. 제조물 취급상인, 도·소매업자, 임대인도 상업적으로 취급한 경우에는 해당된다. 단 용역제공에 부수하여 제조물을 공급하는 때에는 상업적 공급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조물결함은 다른 제조물과 다르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 설계상의 결함일 때에는 위험-분석이론에 따라 ①보다 안전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②동 대체설계를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 없이 대체할 수 있다는 점, ③동 대체설계가 제조물의 효용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점 등 3가지 요소를 입증해야한다. 경고상의 결함과 관련해서는 학식 있는 중간자의 원칙(learned intermediary doctrine: 의사나 약사 등 직업적으로 위험성을 알려 주어야 할 중간자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제조자 등은 경고책임을 면한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소비자의 결함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통상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제조물을 매수한 때에는 제조물이 제조자(혹은 손해배상 피고자)의 손을 떠날 때 이미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추정을 인정해 준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PL법의 특징은 원고의 과실을 제조자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소비자가 위험의 내용을 알고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보상에서 면책된다. 몇 개주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면제해주지 않고 책임을 경감하여 준다.[3,5]

다. 기타 미국법의 참고사항 : ①제조물책임을 질 공급자들이 복수일 때(제조자, 유통업자 등) 대부분 주에서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복수의 당사자들이 연대책임을 질 때, 그들 사이에는 면책, 또는 책임분담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계약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 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2.3.2 EU의 PL법

EU에서 1985년 7월 25일 '결함제품의 책임에 관한 EU가맹국의 법률, 명령 및 행정규칙의 조정을 위한 각료이사회 지침'을 채택하여 각 가맹국에 통보하여, 지침이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즉 1988년 7월 30일까지는 지침의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각 가맹국의 국내법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달리 추진되어왔으나 현재 모든 나라가 입법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럽에 확산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가인 유럽의 이러한 PL법의 변화에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한다.

EU지침은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을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3]

2.3.3 일본의 PL법

일본에선 1972년 PL연구회를 통해 꾸준한 논의를 거쳐서 1994년 6월 22일에 입법 제정되었다. 공표한 다음 일년 후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산업 분위기는 우리 나라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여 일본의 법률이 우리 나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PL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3,6]

2.4 PL법에 관련된 기업의 대처방안

PL법에 관련된 기업의 대처방안으로는 다음

〈표 3〉 EU의 PL법 관련 지침

항 목	주 요 내 용
제1조(무과실 책임)	제조물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함(미국의 무과실 책임, 엄격책임과 같다.)
제2조(적용대상제품)	제일차 농산물 및 수렵품은 제외된 모든 동산을 포함한다. 나라에 따라서는 농산물 및 수렵품도 포함된다.
제3조(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완성품, 원재료, 구성부품의 제조자, 임대업자, 리스 등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 상품 및 제조물에 성명,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할 수 있게 표시하여 스스로 제조업자라고 한 모든 사람. 제조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제4조(인과관계의 입증)	피해자는 제조물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제5조(연대책임)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청구하거나 자유이다.
제6조(제품의 결함)	무과실책임을 채용한다. 당연히 기대되는 안정성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함이다.
제7,8조(면책사유)	제7조에서 기술상의 문제 등 6개 사유를 제조업자가 증명하면 제조물책임에서 면책된다. 제8조에서는 피해자와 제조업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피해자의 기여과실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다.
제9조(손해범위)	EU지침에는 신체장애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만을 인정하며 정신적 손해와 같은 무형의 손해는 각 가맹국에 맡겼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미국은 인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법정책임기간)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까지 책임을 진다.
제16조(책임한도액 제한)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장애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최고책임한도액을 700만ECU 이상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서는 책임한도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제품의 결함을 방지하는 방법과 사고가 발생시 대신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2.4.1 기업내부의 대처방안

제조물 책임대책(PLP : Production Liability Protection)은 제조물안전과 제조물책임방어(PLD: Production Liability Defense)의 모든 측면에서 전사적으로 전조직이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기업에선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①전사적 추진대책 :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직원 개개인의 의식교육이 선행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PL상설전문부서나 PL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PL 전문부서에서는 안전기준, 규격류 등의 정보입수 배포, 제조물책임 판례, 사고례의 입수, 필요정보의 전달, 경고관련 자료의 상호모순, 소비자를 비롯한 사외로부터의 제안 처리문제, 제조물사고에 대비한 문서의 적정성 점검,

〈표 4〉 일본의 PL법

항 목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제조물 결합에 의해 인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1. '제조물'이란 가공된 동산이다. 2. '결함'이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인도시기, 기타 제조물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구비하여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3. '제조업자'는 ①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 ②당해 제조물에 이름, 상호, 상표 및 기타표시를 한 자, ③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 판매와 관련된 형태로 실질적인 제조업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
제3조(제조물책임)	제조자는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손해가 제조물에만 생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면책사유)	다음에 해당되면 배상책임이 없다. ① 당해 제조물을 인도할 당시의 기술로는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없을 때 ② 당해 제조물이 타 제조물의 부품으로 사용된 경우로 결함이 당해 타제조업자의 설계 지시에 따라 제조하고 결함이 발생한데 대해 과실이 없을 때
제5조(기간의 제한)	제조물 인도 후 10년이 경과한 때. 단 신체에 축적되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제6조(민법의 적용)	제조물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 이외 민법에 따른다.

사고발생시의 보험회사 등 외부기관에 대한 조치 등의 작업을 한다.

②설계상의 결함대책 :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개발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통 제품안전설계는 안전성 수준의 설정,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용형태를 확인, 위험을 조사 확인하고, 위험배제방법을 검토, 안전성 확인, 안전성 검토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작업이 있다. 위험배제방법의 우선 순위는 위험배제의 확실성 측면에서 제품본체의 안전화, 안전장치의 부착, 지시·경고 사용설명서 작성을 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소비자 입장에서의 제품안전설계, 전 부문이 참가하는 제품안전설계, 제품본체안전화가 최우선이고 지시·경고는 최후수단으로 이용해야한다.

③제조상의 결함대책 : 이 단계에서는 제조물책임은 개발설계단계에서 설정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대책은 품질관리 품질보증활동이어야한다. 대량생산방식에 따른 위험의 거대화로 때로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소한 결함이 소비자 손에 넘어가면 같은 원인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액이 거액이 될 수 있다. 외부조달품인 원자재나 부품 외주가공품의 품질, 안전성도 자사제품의 안전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부조달품을 인수할 때에 검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대책상의

지도를 하여야 하는 점에 있어서 제조부문은 자사의 제조물책임대책상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④지시·경고상의 결함대책 : 위험의 배제방법으로는 제품본체의 안전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한다. 이것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시·경고를 하여야한다. 지시·경고는 제품본체의 안전화 및 안전장치의 부착을 기술적, 기능적 혹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 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이 있다. 첫째 위험배제를 위한 수단이므로 제품의 중요 보안부품과의 위치를 고려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한다. 둘째 위험성을 표시한다는 것이 단점만이 아니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표시정보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성을 표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셋째는 최종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제품 지식수준이나 행동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 문구 등을 연구하여야 한다. 지시·경고상의 결함도 제품의 결함이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위험표시를 분명히 전달 이해되고 실행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한다.

⑤판매 설치 A/S부문의 제조물책임대책 : 제조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물책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이 분야의 담당자들도 제조물책임대책에 다음과 같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보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므로 효과적인 사고방지활동을 할 수 있다. 판매, 설치 A/S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 때문에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둘째 실질적인 소비자 정보수집, 반영에 따른 제품안전향상, 판매, 설치, A/S 부문이나 외부사업자는 설계 제조부문보다도 소비자와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제품의 결함방지의 필수적인 소비자의 제품지식수준, 실제의 사용형태 사고를 직접 파악하여 그 정보를 설계부문 등에 제공함으로서 제품의 안정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⑥사고처리대책 : 기업의 제품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제품사고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제조물책임대책이다. 사고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사후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한다. 첫째 사고에 대한 신속·적절한 조치는 고객서비스면에서 중요하면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엔 확실히 배상하여 줄 수 있는 자금대책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대책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사고처리비용은 배상금뿐만 아니라 사고처리에 따르는 사기저하가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셋째 사고정보를 제품안전의 향상에 반영함으로서 사고발생이나 사고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게해야한다. 사고처리대책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제품에 결함이 없으면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품의 각종 안전성에 관한 문서·기록을 일상업무시 확실히 작성·보관하여야 한다.[4,8]

2.4.2 PL 보험

보험제도의 의의는 기업의 제조물책임 위험을 대비하는 경제제도로 결함제조물 사고에 대한 사고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PL의 비용이 점점 거대화되면서 기업의 존립문제화가 되고 기업의 자위수단이며 피해자구제수단이 되었다. 기업은 PL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손해액을 부담함으로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년 보험가입비용만 부담

하게 되면 연도별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므로 기업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보험 종류로는 다음 〈표 5〉와 같이 3가지가 있다.[5,7]

〈표 5〉 보험종류

보험종류	내 용
제조물책임보험	기업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타인에게 입힌 인명피해, 재산피해, 영업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사고처리 비용을 보상한다.
제조물 자체보험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인한 결함제조물 자체 손해를 보상한다.
제조물 회수비용보험 (리콜보험)	결함제조물을 회수, 대체, 수리하여야 할 경우 회수비용, 신용회복에 필요한 비용, 영업손실, 결함제조물을 폐기할 경우의 원가를 보상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의 보험계약 요소로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제품, 보험가한도액,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지역, 보험료 등이 있다.

3.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PL법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서론에서 PL법 이해를 위하여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고, 본론에서는 PL법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과 각국의 PL법을 살펴봤다. 우리 나라 수출과 관련이 많은 미국, 유럽, 일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우리 나라는 아직 PL법이 입법화되진 않았다. 대신 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살펴봤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머지 않아 PL법이 입법되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기업 입장에서 PL법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업내부에서 취해야할 부분과 사후대책으로 PL보험에 대하여 살펴봤다.

PL법은 소비자와 기업의 제조자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추후 좀더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PL대처 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연구할 것이 남아있다.

참고문헌

1. 강창경, "PL법과 리콜제도의 전망과 예상 쟁점 사항", 한국표준협회 PL특별 세미나, 1997.
2. 동양화재해상보험, "국내외 사고사례", 동양화재해상보험, 서울, 1996.
3. 동양화재해상보험, "제조물책임 자기진단 점검표", 동양화재해상보험, 서울, 1996.
4. 동양화재해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동양화재해상보험, 서울, 1995.
5. 박종구, "PL 리콜, 업종별로 이런 사례는 꼭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협회 PL특별 세미나, 1997.5.
6. 오창수 감수, "PL법 기업이 모르면 망하고 소비자가 모르면 손해본다", 청림, 서울. 1995.
7. 지수현, "PL보험의 실태와 이용", 한국표준협회 PL특별 세미나, 1997.
8. 차승규, "제조물책임을 대비한 사내체제 구축", 한국표준협회 PL특별 세미나, 1997.
9. 현암사 편집부, "대법전", 현암사, 서울, 1996.

(원고 접수일 1997. 8. 13)